

[별지 1]

사단법인정관준칙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앞에 "사단법인"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
2.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한다.
3.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사원

1. 사원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2. 사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사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4.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5. 사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 견책등을 할 수 있도록 징계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정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인이상으로, 감사는 2인이상으로 정한다.
2.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다.
3.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4.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3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5.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6.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경우 그 보충방법을 정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이사장(법인의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는 것으로 정한다.
8.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정한다.
9.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10.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 가.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다. "가"호 및 "나"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 라. "다"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4장 총회

1. 총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 가. 임원선출
  - 나.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 다.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
  - 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마. 사업계획의 승인
  - 바. 기타 중요한 사항
4. 의장 또는 사원의 총회 의결 제척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의장 또는 사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제5장 이사회

1.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도록 정한다.
2. 이사회는 회기·소집·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3. 이사회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 업무의 집행
  - 나. 사업계획의 운영
  - 다. 예산결산서의 작성
  -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마. 정관의 변경
  - 바. 재산관리
  - 사.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아. 총회에 부의한 안건의 작성
  - 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장 재정(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도록 정한다.
  - 가. 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한다.
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미리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법인의 수익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4. 법인의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5.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6.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하도록 정한다.
7.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 제7장 사무부서

1.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두도록 한다.
2. 사무부서에 장 1인과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도록 한다.

#### 제8장 보칙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 있다.
2.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잔여 재산은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도록 정할 수 있다.
3.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되, 각각 재적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보처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4.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승인을 얻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정한다.
5. 법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 부칙

1. 정관은 법인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2. 필요한 경과조치를 정할 수 있다.
3. 설립자의 주소·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다.